

담당	책임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1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SPC여부	[] 예 [] 아니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④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 SPC 여부 [] 예 [] 아니오		
	⑤ 주소	본사 (전화번호: , FAX:)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FAX:)		
		홈페이지 대표 E-mail		
	⑥ 신고(허가)된 사업명			
	⑦ 자본금(출연금)			
	⑧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⑨ 상시 근로자 수	기존(변경등록) 명	등록 후 예상규모(신규 및 변경등록) 명		
⑩ 변경등록 내용 (변경등록의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기 타 ※ 변경내용			
	⑪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해당할 경우)	양도 또는 감소인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양 수 인 (외국인의 경우)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양도 또는 감소할 주식(지분)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양도 또는 감소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양도 또는 감소 총액(A×C)
⑫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사유 (해당할 경우)	[] 외국인투자지분 전량 양도·감소, [] 피합병법인, [] 폐업·청산, [] 기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하나은행장 귀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동의서]

본 신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취소 또는 등록말소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사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4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자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첨부서류	<신규등록인 경우>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로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 (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주주명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표란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도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 ①~② 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을 적고, 상호 또는 명칭을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법인체로서 직·간접적으로 최종 지배모기업이 통제하며, 고용, 생산 또는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UCP, Ultimate Controlling Parent)은 SPC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③~④ 란은 외국투자자가 출자(또는 출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취득한 주식 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 ⑤ 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회사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며(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 e-mail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⑥ 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 ⑦ 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입자본금(또는 출연금)을 원화로 적습니다. 만일 납입자본금과 주식 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하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 ⑧ 란에서 '취득총액'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 취득총액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 취득총액과 변동 취득총액의 합계를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인출한 날의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습니다. '액면총액'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주식 등의 액면총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 ⑨ 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또는 변경등록신청)의 원인이 되는 외국인투자금액 등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 후 예상규모'란에 상시 근로자수 전체인원을 기재하며,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에 변경등록 신청 전일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었던 상시근로자수를 적고, '등록 후 예상규모'란에 기존 상시근로자수에 신규 예상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한 전체인원을 기재합니다.)
- ⑩ 란은 '변경등록'의 경우에 해당 변경등록의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V]표시를 하고, 변경내용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항목은 필요에 따라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16년 7월 28일 신고된 증액투자 등록, '16년9월30일 주식양도에 따른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변경은 외국인의 신주 및 기존주식등 취득, 증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주식양도 및 감소등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의 변경은 외국투자자의 주식양수(양도), 외국인의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중여에 의한 취득 등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 등'의 변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⑪ 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사항 중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 또는 감소인, 양수인(외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감소할 주식(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 ⑫ 란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말소 사유를 [V]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 예시 > '16년 7월 28일 외국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내국인에게 전부 매각, '17년 2월 23일 A사와 B사의 합병으로 인해 B 외국인투자기업 소멸

처리절차

